

경운대학교 대학입학전형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입학전형에서 현생학습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행학습”이라 함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
2. “영향평가”라 함은 대학입학전형에서 실시되는 고사(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처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
- ③ 위원은 본교 교원 및 외부 위원(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

제7조(평가 시기 및 조치사항) ① 영향평가는 대학입학전형이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 ② 영향평가의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에서 지원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